|  |  |  |
| --- | --- | --- |
| **중대기술설비 수입세수 정책 유관 목록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7] 3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 주관부서,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발전개혁위, 해관총서광동분서, 각 직속 해관, 재정부 주(驻)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사전문요원판사처:  최근 국내 설비제조업 및 해당 부대산업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산업주관부서, 산업협회, 기업대표 등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기초 하에,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은 중대기술설비 수입세수 정책의 유관 목록에 대해여 수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국가 지원 발전의 중대기술설비 및 상품목록(2017년 수정)>(별첨1 참조), <중대기술설비, 상품수입 주요 부품 및 원자재 상품목록(2017년 수정)>(별첨2 참조)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며,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국내기업이 본 통지 별첨1에 열거한 설비 또는 상품의 생산을 위해 별첨2에 열거한 상품을 확실히 수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세 및 수입 단계의 증치세를 면제한다. 별첨 1, 2중에 집행연도를 열거하였을 경우, 관련 설비, 상품, 부품 및 원자재의 면세 집행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다.  국내 산업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혼류 수력발전기계 등 설비의 면세정책을 취소하고, 관련 설비 및 상품을 생산 제조하는 기업의 2018년도 사전지급 면세 수입한도액도 상응하여 취소한다.  2.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별첨3 참조)은 2018년 1월 1일자로 집행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1월 1일포함) 비준한 <국무원의 수입설비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발[1997] 37호) 유관 규정에 따르거나 비추어 수입세수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아래의 항목과 기업에서 별첨3에 열거한 자가용 설비를 수입 및 계약에 따라 상술한 설비의 기술, 부속품, 예비부품을 수입 시, 모두 규정대로 수입세를 징수한다.  2.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국내 투자항목 및 외상투자항목  2.2 외국정부대출 및 국제금융조직 대출항목  2.3 외자기업에서 가격 미책정 수입설비를 제공하는 가공무역기업  2.4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대산업항목  2.5 <해관총서의 외상투자 유관 수입세수 정책을 한층 장려하는 것에 관한 통지>(서세[1999] 791호)에 규정한 외상투자기업과 외자기업이 투자 설립한 연구센터는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기술개조 항목을 진행한다.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07년 수정)>을 조정하기 전에 이미 비준한 상술 항목을 순조롭게 실시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 전(12월 31일 포함)에 비준한 상술 항목과 기업이 2018년 6월 30일 전(6월 30일 포함) 설비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계속하여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과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에너지국의 중대기술설비 수입세수정책 유관 목록 및 규정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관세[2015] 51호) 별첨3과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의 <국내 투자항목이 면세불가 수입상품목록>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2년 제83호)에 따라 집행한다.  2018년 7월 1일부터 상술한 항목과 기업이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 중에 열거한 설비를 수입 시, 모두 규정대로 수입세를 징수한다. 정책집행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항목과 기업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반드시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과 <국내 투자항목 면세불가수입상품 목록(2012년 조정)>을 대조하여 과세면세를 심사할 경우,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과 <국내 투자항목의 면세불가 수입상품목록(2012년 조정)>에 열거한 상품명칭과 동일하거나 또는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에서만 열거한 상품은 모두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와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에 열거한 상품 및 해당 기술의 규격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3. 2018년 1월 1일부터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과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에너지국의 중대기술설비 수입세수 정책 유관 목록 및 규정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관세[2015] 51호)별첨 1, 2, 3을 폐지한다.  별첨(다운로드):  1.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기술설비 및 상품목록(2017년 수정).pdf  2. 중대기술설비 및 상품수입 주요 부품, 원자재 상품목록(2017년 수정).pdf  3.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상품목록(2017년 수정).pdf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  2017년 12월 22일 |  | **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  **有关目录的通知**  财关税〔2017〕39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国家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发展改革委，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  根据近年来国内装备制造业及其配套产业的发展情况，在广泛听取产业主管部门、行业协会、企业代表等方面意见的基础上，财政部、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税务总局、能源局决定对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进行修订。现通知如下：  一、《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7年修订）》（见附件1）和《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商品目录（2017年修订）》（见附件2）自2018年1月1日起执行，符合规定条件的国内企业为生产本通知附件1所列装备或产品而确有必要进口附件2所列商品，免征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附件1、2中列明执行年限的，有关装备、产品、零部件、原材料免税执行期限截至到该年度12月31日。  根据国内产业发展情况，自2018年1月1日起，取消混流式水电机组等装备的免税政策，生产制造相关装备和产品的企业2018年度预拨免税进口额度相应取消。  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7年修订）》（见附件3）自2018年1月1日起执行。对2018年1月1日以后（含1月1日）批准的按照或比照《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有关规定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的下列项目和企业，进口附件3所列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及配套件、备件，一律照章征收进口税收：  （一）国家鼓励发展的国内投资项目和外商投资项目；  （二）外国政府贷款和国际金融组织贷款项目；  （三）由外商提供不作价进口设备的加工贸易企业；  （四）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项目；  （五）《海关总署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有关进口税收政策的通知》（署税〔1999〕791号）规定的外商投资企业和外商投资设立的研究中心利用自有资金进行技术改造项目。  为保证《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7年修订）》调整前已批准的上述项目顺利实施，对2017年12月31日前（含12月31日）批准的上述项目和企业在2018年6月30日前（含6月30日）进口设备，继续按照《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国家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及规定的通知》（财关税〔2015〕51号）附件3和《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的公告》（2012年第83号）执行。  自2018年7月1日起对上述项目和企业进口《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7年修订）》中所列设备，一律照章征收进口税收。为保证政策执行的统一性，对有关项目和企业进口商品需对照《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7年修订）》和《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2012年调整）》审核征免税的，《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7年修订）》与《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2012年调整）》所列商品名称相同，或仅在《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7年修订）》中列名的商品，一律以《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7年修订）》所列商品及其技术规格指标为准。  三、自2018年1月1日起，《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国家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及规定的通知》（财关税〔2015〕51号）附件1、2、3予以废止。  附件（下载）：  [1：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7年修订）.pdf](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1/P020180105595887622136.pdf)  [2：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商品目录（2017年修订）.pdf](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1/P020180105595888067652.pdf)  [3：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7年修订）.pdf](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1/P020180105595888423280.pdf)  财政部  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能源局  2017年12月22日 |